

## 프랑스 개혁신교회의 예배와 직제에 관한 연구

최윤배(장로회신학대학교)

### I. 서론

역사적으로 볼 때, 구소련 공산치하에 있던 동구권 헝가리 국가개혁신교회가 당한 핍박이상으로 프랑스 개혁신교회와 위그노들은 프랑스의 로마 가톨릭교회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다. 여기에 대한 단적인 예가 바로 바돌로메 대학살사건이다.

칼뱅이 파송한 선교사가 제네바교회의 모범을 따라 1555년에 뿌아띠에(Poitiers; Poitier)에 프랑스 개혁신교회를 세운 후, 프랑스 개혁신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여 1559년 파리에서 프랑스 개혁신교회 창립총회 당시 100개 교회가 설립되었고, 1562년에는 2,150 교회가 설립되었는데, 프랑스 인구 2천만 명 가운데 3백만 명이 개신교 신앙을 갖게 되었다.<sup>1)</sup> 1571년 프랑스 개혁신교회 제7차 총회가 로셀(Rochelle)에서 공식적으로 승인한 『프랑스 신앙고백』(Confessio Gallican, 1559)은 칼뱅이 초안한 것이다.<sup>2)</sup> 구이도 드 브레스(Guido de Brès)는 제네바에서 훈련받아 조국에 돌아가 네덜란드의 개혁신교회 설립과 발전에 기여하였는데,<sup>3)</sup> 그가 작성한 『네덜란드 신앙고백』(1561)은 『프랑스 신앙고백』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다.

이같이 프랑스 개혁신교회는 개혁신교회 역사 초기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대에 계속되는 극심한 박해로 말미암아 쇠퇴함으로써 말미암아, 프랑스 개혁신교회의 신학이 널리 전파되지 못하고, 특히 국내에서 프랑스 개혁신교회의 예배와 직제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본고에서 프랑스 개혁신교회의 예배와 직제를 가능한 한 프랑스개혁신교회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더듬어 고찰하고자 한다.

1) Robert M. Kingdom, *Geneva and the Coming of the Wars of Religion in France, 1555-1563* (Geneva: Droz, 1956), 79ff; Rober M. Kingdon, *Registres de la compagnie des pasteurs de Genève*, tome II 1553-1564 (Genève: Droz, 1962).

2) 최윤배 공저, 『개혁신교회의 신앙고백』(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7), 250-251.

3) 최윤배 공저, 『개혁신교회의 신앙고백』, 266-267.

## II. 프랑스 개혁교회의 예배

### 1. 초기 프랑스개혁교회 예배

프랑스 개혁교회 목사들은 『프랑스 신앙고백』(1559)과<sup>4)</sup> 『교회치리에 관하여/교회치리법』(*Quant a la discipline ecclesastique*, 1559.5.25)에<sup>5)</sup> 서명하였다. 프랑스 초기 개혁교회 예배를 고찰하기 위하여 이 두 문서에 집중한 후, 우리는 최근 프랑스개혁교회의 예배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프랑스 신앙고백』(1559)의 제21조는 성령의 은사로서 신앙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한다.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믿는다. 우리는 성령의 신비한 능력에 의해서 신앙 안에서 조명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특별한 은사이기 때문에, 선택된 자들이 영광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고, 다만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 보다 더 낮게 여기심을 받는데 대하여 감절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sup>6)</sup>

제23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써 율법의 본질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상징들이 폐기되었다고 말하면서도, 복음적 관점에서의 규칙이 우리의 삶을 위하여 여전히 필요함을 주장한다.

4) 최윤배 공저,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7), pp. 250-265; W. Niesel(Hrg.), *Bekenntnisschriften und Kirchenordnungen der nach Gottes Wort reformierten Kirche*, 66-75; Arthur C. Cochrane (Ed.), *Reformed Confessions of Sixteenth Century*, pp. 137-158; David W. Hall & Joseph H. Hall(ed.), *Paradigms in Polity: Classic Readings in Reformed and Presbyterian Church Government*, pp. 156-158; 이형기, 『장로교의 장로직과 직제론』, pp. 145-146; Paul Jacobs, *Theologie reformierter Bekenntnisschriften in Grundzügen* (Neukirchen Kreis Moers: Neukirchener Verlag, 1959), pp. 39-42; 이장식 (편), 『기독교신조사<제1집>』(서울: 컨콜디아사, 1979), pp. 205-219.

5) W. Niesel(Hrg.), *Bekenntnisschriften und Kirchenordnungen der nach Gottes Wort reformierten Kirche*, pp. 75-79; David W. Hall & Joseph H. Hall(ed.), *Paradigms in Polity: Classic Readings in Reformed and Presbyterian Church Government*, pp. 134-139; 이형기, 『장로교의 장로직과 직제론』, pp. 143-145.

6) W. Niesel(Hrg.), *Bekenntnisschriften und Kirchenordnungen der nach Gottes Wort reformierten Kirche*, 71.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율법의 모든 상징들(toutes figures de la Loy)은 끝이 났다. 그러나 비록 의식(儀式; les ceremonies)들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지라도, 율법의 본질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 남아 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식들이 성취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복음의 약속이 확증되게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규제하기 위하여 우리는 율법과 예언들로부터 도움을 찾아야만 한다.”<sup>7)</sup>

『프랑스 신앙고백』의 제24조는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예배를 타락시키는 각종 잘못된 의식들과 습관들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과 일치된 기도와 예배를 드릴 것을 강조한다.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변호자이며, 그는 우리에게 그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도록 명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에 일치하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불법이다. 죽은 성도들의 중보와 관계된 인간의 모든 상상은 인간을 기도의 올바른 방법 또는 형태(la forme de bien prier)로부터 이탈하게 하는 사탄의 오용과 고안물이다. 또한 우리는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을 훼손시키는 그와 같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거부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연옥은 똑같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환상으로 간주한다. 또한 이 연옥으로부터 수도원서약, 순례, 결혼과 육식금지, 특정 축제일의 준수, 고해성사, 면죄부, 용서와 구원의 공로를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나온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거부하는 이유는 그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공로의 거짓 사상 때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양심에다가 명에를 씌우는 인간의 발명품들이기 때문이다.”<sup>8)</sup>

신앙고백 제25조는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해서 세워진 신성불가침의 교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복음을 설교하는 목사의 말씀 선포와 성례전의 사역이 필수불가결함을 강조한다.

<sup>7)</sup> W. Niesel(Hrg.), *Bekennnisschriften und Kirchenordnungen der nach Gottes Wort reformierten Kirche*, 71.

<sup>8)</sup> W. Niesel(Hrg.), *Bekennnisschriften und Kirchenordnungen der nach Gottes Wort reformierten Kirche*, 71-72.

“지금 우리는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향유한다.(iouissons)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믿는다.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해 세워진 교회의 질서는 신성불가침한 것이 되어야 하며, 그러므로 교회는 교훈하는 목사(des pasteurs)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들이 정당하게 부름 받았고, 신실하게 그들의 직무를 수행할 때, 우리는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교훈에 경청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 같은 도움과 부차적인 수단들에 묶어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같은 강제수단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말씀 선포와 성례전의 직무(le ministere de la predication de la parole et des Sacremens)를 파괴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힘이 닿는 데 까지 행동하기를 좋아하는 모든 공상가들을 혐오한다.”<sup>9)</sup>

제27조는 신자들의 모임으로서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부름 받았음을 역설하고 있다.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믿는다. 어떤 것이 참된 교회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주의와 신증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참된 교회라는 용어는 많이 오용되어왔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동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순수한 종교를 따르기로 동의하며, 성장과 발전의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종교 안에서 자신들의 모든 삶을 발전시키고, 하나님 경외(敬畏; la crainte de Dieu)를 더욱 높여가는 신자들의 모임(la compagnie des fideles)이 참된 교회이다.”<sup>10)</sup>

제28조는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신앙고백과 성례전이 받아들여지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없고, 부패한 성례전이 가득 찬 로마 가톨릭교회 속에는 참된 예배에 정반대되는 모든 미신들과 우상 숭배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신앙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에 종속되지 않거나 성례전이 사용되지 않는 곳에는 교회가 있을 수가 없다.

<sup>9)</sup> W. Niesel(Hrg.), *Bekennnisschriften und Kirchenordnungen der nach Gottes Wort reformierten Kirche*, 72.

<sup>10)</sup> W. Niesel(Hrg.), *Bekennnisschriften und Kirchenordnungen der nach Gottes Wort reformierten Kirche*, 72.

그러므로 우리는 교황의 집회들을 정죄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그곳으로부터 사라졌으며, 그들의 성례들은 부패하였거나 거짓되었거나 훼손되었고, 모든 미신들과 우상숭배들(toutes superstitions et idolatries)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sup>11)</sup>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질서로서의 목사와 장로와 집사직을 통해 통치되어야 하는 바, 교리보전, 거룩한 삶의 실천, 구제와 돌봄을 통한 사랑의 교제를 하며, 모든 예배모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며(제29조),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감독 이시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밑에서 동등한 권위와 힘을 갖는다.(제30조)

“XXIX. 참된 교회와 관련해서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믿는다. 참된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질서에 따라 통치되어야 한다. 참된 교회에는 목사들(des Pasteurs)과 장로들(des Surveillans)과 집사들(Diacres)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참된 교리가 유지되고, 잘못이 교정되며, 감독되고, 가난한 자들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도움을 받아야 한다. 집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져야 하며, 성인과 어린이가 모두 교육받아 교화되어야 한다. XXX.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믿는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모든 참된 목사들은 한 머리시며, 주권적이고도 우주적인 한 유일한 감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 동일한 권위와 동등한 힘을 갖는다. 그 결과 어떤 교회도 어떤 다른 교회에 대한 어떤 권위를 주장하거나 지배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sup>12)</sup>

초기 프랑스크개척교회의 예배 이해를 위하여『교회치리에 관하여/교회치리법』(Quant a la discipline ecclesiastique, 1559)을 검토하기로 하자. 이 교회치리법은 주로 당회(Consistoire; le senat de l'Eglise), 노회(Concile Provincial), 총회(Synod)를 중심으로 교회의 세 직분자들, 즉 목사(les Ministres), 장로(Les Anciens), 집사(Diacres)의 임명이나 제명 등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우리가 검토한 결과, 직제에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고, 우리의 주제인 예배와 관련된 내용은 거의 전무하다.<sup>13)</sup>

<sup>11)</sup> W. Niesel(Hrg.), *Bekennnisschriften und Kirchenordnungen der nach Gottes Wort reformierten Kirche*, 72-73.

<sup>12)</sup> W. Niesel(Hrg.), *Bekennnisschriften und Kirchenordnungen der nach Gottes Wort reformierten Kirche*, 73.

<sup>13)</sup> W. Niesel(Hrg.), *Bekennnisschriften und Kirchenordnungen der nach Gottes Wort reformierten Kirche*, pp. 75-79; David W. Hall & Joseph H. Hall(ed.), *Paradigms in Polity: Classic Readings in Reformed and Presbyterian Church*

## 2. 오늘날의 프랑스개혁신교회의 예배<sup>14)</sup>

1533년 뉘사텔(Neuchâtel)에서 인쇄된 『예식서』(*La manière et fasson*), 깔뱅의 초기예식서와 1542년 즈네브 예식서를 비롯한 프랑스 개혁신교회 예식서의 역사(歷史)에 대한 자세한 언급의 필요성을 우리는 느끼지 못한다.<sup>15)</sup> 오늘날 프랑스 개혁신교회의 『예식서』(Liturgie)는 서문에서 예식서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 예식서는 깔뱅 등을 비롯하여 프랑스 개혁신교회에서 발간된 예식서들과 똑같지는 않지만, 여러 차례의 개정작업의 과정을 경험했다. 곧, 이 예식서는 깔뱅의 예식서, 1659년 총회의 개정(à Conrart par le synode de Loudun), 1896년의 개정을 거치고, 그 후 베르지어(d' Eugèbe Bersier)의 예식서, 1946년 이래 여러 번 개정작업을 거쳤고, 다시 1950년에 편집된 그레노블(Grebonle) 총회에서 수정되어 결정판이 나오게 되었다.<sup>16)</sup>

이 예식서는 “예비노트”(note préliminaire) 부분에서 “본 예식서는 성찬이 초대교회(Église primitive)와 종교개혁자들의 사상 속에서 가졌던 위치를 성찬에 부여한다.”라고 시작함으로써, 프랑스 개혁신교회의 예배와 예전이 초대교회와 종교개혁 전통에서 있음을 밝힌다.<sup>17)</sup> 이 예식서를 사용하는 자세에서 성서와 종교개혁 정신을 강조하고, 성찬, 자유기도, 주기도, 묵도, 음악과 찬양에 대하여 간략하게 언급한다.(Liturgie, pp. 9-11)

세례와 성찬식이 있는 주일예배로서 4부(部)로 구성된 예배를 살펴보자.(Liturgie, pp. 13-45)

[제1부: (타종 소리가 끝나다.) 예배시작을 위하여 정해진 정확한 시간, 즉 오르간 연주 끝에, 집례자는 성찬상(聖餐床)으로 접근한다. → 인사(salutation) → 예배의

Government, pp. 134-139; 이형기, 「장로교의 장로직과 직제론」, pp. 143-145.

<sup>14)</sup> Eugène Bersier, *Project de Révision de la Liturgie des Église Réformées de France* (Paris: Librairie G. Fischbacher, 1888); REGLISE REFORMEE DE FRANCE “Discipline et Règlement général d’application d’articles de la Discipline,” ([www.eglise-reformee.fr.org](http://www.eglise-reformee.fr.org)); Église Réformée de France (ed.), *Liturgie* (Paris: Éditions Bergre-Levrault, 1955); Église Réformée de France (ed.), *Le conseil presbytéral: Un ministère aux mille facettes* (Paris: Cordination Edifier & Former, 2009); Église Réformée de France (ed.), *Ministères: Ministères dans l’Église Réformée de France* (Paris: Cordination Edifier & Former, 2009).

<sup>15)</sup> Eugène Bersier, *Project de Révision de la Liturgie des Église Réformées de France* (Paris: Librairie G. Fischbacher, 1888), pp. VII-LVII(7-56).

<sup>16)</sup> Église Réformée de France (ed.), *Liturgie* (Paris: Éditions Bergre-Levrault, 1955), “Avant-propos.”

<sup>17)</sup> Église Réformée de France (ed.), *Liturgie*, p. 9.

부름(invocation) → 경배(Adoration) → 시편 또는 찬송(Psaume ou cantique) → (회중은 앉는다.) → 하나님의 율법(loi de Dieu) → 죄의 고백(confession des péchés) → 용서(사죄) 선언(déclaration de pardon) → 은혜에 대한 감사기도(action de graces) →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confession de la loi) → 제2부: (집례자는 강단에 올라간다.) → 조명을 위한 기도(prière d'illumination) → 성경봉독(lecture de la Bible) → 설교(prédiction) → 찬송 또는 시편(cantique ou psalme) → 알림(annonces) → 헌금봉헌(offrande) → [세례](baptême) → 중보기도(prière d'intercession) → 주기도(oraison Dominicale) → 제3부: (집례자는 강단에서 내려와 성찬상 뒤로 가서, 빵과 포도주를 덮어둔 상보(床襟)를 벗긴다.) → 예비기원(préface) → 성찬제정사(institution) → 기도(prière) → 초대(invitation) → 성체분할(fraction) → 성찬참여(communion) → 은혜에 대한 감사기도(action de graces) → 제4부: 권면(exhortation) → 삼위일체 축도(bénédiction)]

축약된 예배예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iturgie*, pp. 13-45)

[타종 소리가 끝나다.] 예배시작을 위하여 정해진 정확한 시간, 즉 오르간 연주 끝에, 집례자는 성찬상(聖餐床)으로 접근한다. → 인사(salutation) → 예배의 부름(invocation) → 경배(Adoration) → 시편 또는 찬송(Psaume ou cantique) → (회중은 앉는다.) → 율법의 요약(sommaire de la loi) → 죄의 고백(confession des péchés) → 용서(사죄) 선언(déclaration de pardon) →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confession de la foi) → 조명을 위한 기도(prière d'illumination) → 성경봉독(lecture de la Bible) → 찬송 또는 시편(cantique ou psalme) → 설교(prédiction) → 찬송 또는 시편(cantique ou psalme) → 알림(annonces) → 헌금봉헌(offrande) → 중보기도(prière d'intercession) → 주기도(oraison Dominicale)]

또한 이 예식서는 교회력에 따른 절기로서 성탄절기(주현절, 성탄일, 성탄 후 주일), 고난절기, 부활절기, 승천일, 성령강림 절기에 대한 예식순서가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Liturgie*, pp. 66-98) 심지어 이 예식서는 노회나 총회의 예식서까지 규정하고 있다. (*Liturgie*, pp. 185-191)

### 3. 소결론

프랑스 개혁신교회는 칼뱅의 예배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전형적인 개혁신교회의 예배의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시편찬송가와 성례전이 예배에 강하게 반영되어 있고, 성도와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율법, 즉 십계명 낭독이 예배에 포함되어 있고,

특별히 봉헌헌금을 통한 사랑과 구제의 요소를 잘 간직하고 있다. 깔뱅 당시처럼 예배 집례자가 성찬상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다가 설교 시 강단에 올라갔다가 다시 성찬상으로 내려오는 등 깔뱅 당시 즈네브의 예배 진행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오늘날 프랑스 개혁신교회는 시편 찬송가 외에도 예배 중에 일반 찬송가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sup>18)</sup>

### III. 프랑스 개혁신교회의 직제

#### 1. 『프랑스 신앙고백』(1559, *Confession de foy; Confessio Gallican*)

프랑스 개혁신교회 목사들은 『프랑스 신앙고백』(1559)과<sup>19)</sup> 『교회치리에 관하여』(1559)를 서명하였다. 프랑스 초기 개혁신교회 직제를 고찰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두 문서에 집중한 후, 최근 프랑스개혁신교회의 직제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조국을 떠나 망명생활을 하던 종교개혁자 깔뱅은 『기독교 강요』초판(1536)을 『헌정사』(1535)와 함께 그의 조국 프랑스 왕 프란시스 I세에게 헌정할 만큼 조국 프랑스와 프랑스의 종교개혁 진영에 대한 사랑이 깊었다. 프랑스 개혁신교회 창립총회가 1559년 파리에서 열렸을 때, 총회장이었던 드 모렐(François de Morel)은 한 번 깔뱅에게 신앙고백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깔뱅은 1557년에 35개 조항으로 구성된 신앙고백을 만들었고, 파리 총회에 이 신앙고백과 함께 대표자들도 파송했다. 파리 총회는 깔뱅이 보낸 이 신앙고백을 검토하여, 몇 군데를 약간 수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조항(신론)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조항(계시론/말씀론), 즉 처음 두 개 조항을 고치고, 확대하여 6개 조항을 첨가하여, 모두 40개 조항으로 만들었다. 파리 총회는 이 신앙고백을 지금은 지역 교회의 자료로서만 채택하기로 하고, 나중에 꼭 필요할 경우, 행정관 또는 왕에 의해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고백은 1559년 즈네브의 성경출판사에 의해서 출판되었고, 특별 편집 출판 역시 『신앙고백』[*Confession de foy, faite dun commun accord par les François, qui desirent vivre selon la pureté? de l'Evangile de notre*

<sup>18)</sup> Olivétan(ed.), *All?luia: Avec le Christ, dépasser les frontières* (Lyon: Editions Olivétan, 2005).

<sup>19)</sup> 참고, 최윤배 공저, 『개혁신교회의 신앙고백』(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7), pp. 250-265.



*Seigneur Jesus Christ*(motto: 1 Petr. 3:15)]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칼뱅의 후계자인 베자(T. Beza)가 1560년 프랑스 왕 프란시스 II세에게 서문과 함께 이 신앙고백을 발송하였다.

1571년 프랑스 개혁신교회의 제7차 총회가 로셸(Rochelle)에서 개최되었을 때, 이 신앙고백이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다. 그러므로 이 신앙고백은 『라 로셸 신앙고백』(*Confession de foi de La Rochelle*), 『위그노들의 신앙고백』, 『프랑스 신앙고백』(*The French Confession of Faith*), 『갈리칸 신앙고백』(*Confessio Gallican*)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지고 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강력한 로마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항상 개신교 내지 개혁신교회는 심한 박해를 받았다. 나중에 개신교를 동정하고 인정한 앙리 IV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이 신앙고백을 엄숙하게 공인했다. 처음에 프랑스어로 작성된 이 신앙고백은 칼뱅에게서보다 더 강한 자연신학 사상과 스콜라신학 사상이 첨가되기는 했지만, 대체로 칼뱅의 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삐몽(Piemont)의 보도와 사람들(Vaudois)과 즈네브에 살던 이탈리아의 피난민들의 신앙고백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특히 이 신앙고백은 독일에서는 베젤(Wesel)에서 1568년에 채택되었고, 1571년 독일 엠덴(Emden)에서 열린 네덜란드 개혁신교회 창립총회에 의해서 『네덜란드 신앙고백』과 함께 공식적으로 채택되었고, 이 신앙고백은 『네덜란드 신앙고백』과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의 형성에 지대한 신학적 영향을 미쳤다.<sup>20)</sup>

이미 앞에서 말했다시피, 『프랑스 신앙고백』은 4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독자들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내용상으로 나누면, ① 신론과 계시론(제1조~8), ② 인간론과 죄론(제9조~11), ③ 그리스도론(제12조~24), ④ 교회론(제25조~38), ⑤ 국가론(제39조~40)이다.

『프랑스 신앙고백』제25조는 그리스도의 권위에 근거를 둔 교회질서의 신성불가침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목사직과 목사에 의해서 수행되는 말씀선포와 성례전

<sup>20)</sup> CR IX, 715ff; E. F. K. Müller, *Die Bekenntnisschriften der Reformierten Kirche*, (1903), S. 221; W. Niesel(Hrg.), *Bekenntnisschriften und Kirchenordnungen der nach Gottes Wort reformierten Kirche*(Zürich : Evangelischer Verlag A.G., 1938), S. 65-75; Société Commerciale d' Edition et de Librairie(Ed.), *Le catéchisme de Jean Calvin*(Éditions <JE SERS> : Paris, 1934), pp. 130-175; Arthur C. Cochrane(Ed.), *Reformed Confessions of Sixteenth Century*(Westminster John Knox Press : Louisville • London, 2003), pp. 137-158; L. Doekes, *Credo: Handboek voor de Gereformeerde symboliek*(Ton Bolland : Amsterdam, 1975), pp. 51-52; 이장식(번역), 『기독교 신조서』(서울 : 컨콜디아사, 1979), pp. 205-219.

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그것의 필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특별히 제25조로부터 29조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이 강조되면서도 교회의 표지(*ecclesiae notae*)로는 두 가지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XXV. 지금 우리는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향유한다 (iouissons).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믿는다.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해 세워진 교회의 질서는 신성불가침한 것이 되어야 하며, 그러므로 교회는 교훈하는 목사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들이 정당하게 부름 받았고, 신실하게 그들의 직무를 수행할 때, 우리는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교훈을 경청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 같은 도움과 부차적인 수단들에 묶어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같은 강제수단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말씀선포와 성례전의 직무를 파괴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힘이 닿는 데 까지 행동하기를 좋아하는 모든 공상가들을 혐오한다.”<sup>21)</sup>

제27조는 참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동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순수한 종교를 따르기로 동의하며, 성장과 진전의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종교 안에서 자신들의 모든 삶을 발전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경의를 더욱 높여가는 신자들의 모임(*la compagnie des fideles*)”으로 정의함으로써, “모든 신자 제사장직”에 대한 근거를 통해 교회의 일반 교역을 주장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제29조에 따르면,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질서로서의 특수 교역을 말하고, 교회의 직제로서 목사직, 장로직, 집사직을 주장한다.

“XXIX. 참된 교회와 관련해서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믿는다. 참된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질서에 따라 통치되어야 한다. 참된 교회에는 목사들(*des Pasteurs*)과 장로들(*des Surveillans*)과 집사들(*Diacres*)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참된 교리가 유지되고, 잘못이 교정되며, 감동되고, 가난한 자들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도움을 받아야 한다. 집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져야 하

21) W. Niesel(Hrg.), *Bekenntnisschriften und Kirchenordnungen der nach Gottes Wort reformierten Kirche*, 72, 참고, David W. Hall & Joseph H. Hall(ed.), *Paradigms in Polity: Classic Readings in Reformed and Presbyterian Church Government*, pp. 156-158; 이형기, 「장로교의 장로직과 직제론」, pp. 145-146; Paul Jacobs, *Theologie reformierter Bekenntnisschriften in Grundzügen* (Neukirchen Kreis Moers: Neukirchener Verlag, 1959), pp. 39-42.

며, 성인과 어린이 모두 교육받아 교화되어야 한다.”<sup>22)</sup>

제30조는 머리가 되시고, 우주적인 유일한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에서 모든 목회자들은 동일한 권위와 동등한 힘을 갖으며, 어떤 교회도 다른 교회를 주장할 수 없다고 선포함으로써 로마가톨릭교회의 계층구족인 성직계급과 로마교회의 사법적 우월성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내포되어 있다.

“XXX.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믿는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모든 참된 목사들은 한 머리시며, 주권적이고도 우주적인 한 유일한 감독(seul universel Evesque)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 동일한 권위와 동등한 힘(mesme autorit? et egale puissance)을 갖는다. 이 결과 어떤 교회도 어떤 다른 교회에 대한 어떤 권위를 주장하거나 지배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sup>23)</sup>

특히 교회의 직분자들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비록 비상상황 하에 선거를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더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접 소명과 부름 받은 증거가 모두 필요하다.

“XXXI.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믿는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권위로 교회를 통치하는 책임을 맡을 수가 없고, 가능한 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이것은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예외적인 조건을 만드는 이유는 오늘날의 상황과 같이 가끔 교회의 상태가 방해를 받아 파멸과 붕괴 가운데 있는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 특별한 방법 하에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목사들(Pasteurs)과 장로들(Surveillans)과 집사들(Diacres)은 그들의 직무로 부름을 받은 증거를 가져야만 한다.”<sup>24)</sup>

제39조와 제40조는 교회의 정부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와 공무자”로서의 행정관료들을 존경할 것을 강조하고, 공의의 질서를 전복시키려는 자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제국” 침해받

<sup>22)</sup> W. Niesel(Hrg.), *Bekennnisschriften und Kirchenordnungen der nach Gottes Wort reformierten Kirche*, 73.

<sup>23)</sup> W. Niesel(Hrg.), *Bekennnisschriften und Kirchenordnungen der nach Gottes Wort reformierten Kirche*, 73.

<sup>24)</sup> W. Niesel(Hrg.), *Bekennnisschriften und Kirchenordnungen der nach Gottes Wort reformierten Kirche*, 73.

을 경우 정부나 국가에 항거할 수 있는 저항권도 열어 두고 있다.

“XXXIX. 하나님은 무질서한 욕망들을 억제하시기 위해서 세상이 법률들과 행정 관료들에 의해서 통치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왕국, 공화국, 세습적 또는 다른 모든 종류의 정치 형태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정당한 정부에 속하는 모든 정치형태는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인 것을 고려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의 둘째 돌판은 물론 첫째 돌판에 대적하는 범죄를 제압하기 위하여 행정 관료들의 손에 칼을 쥐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고관으로서 행정 관료들에게 복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와 공무자로서 그들을 존경하고, 경의를 표해야 한다. 합법적이고도 거룩한 권위를 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임명하셨다. XL.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법률과 법규에 복종해야 하며, 세금, 조세 그리고 그 밖의 의무를 준행하며, 선하고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복종의 명을 짊어져야 한다. 비록 그들이 불신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 제국이 침해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위를 거부하고 재산의 공유와 혼란을 조장하여 공의의 질서를 전복하기 원하는 자들을 혐오한다.”<sup>25)</sup>

이 신앙고백에 나타난 직제를 분석하면서 특별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제32조에 나타난 “감독들”(superintendants)의 의미가 무엇인가이다. “XXXII. 우리는 감독들(superintendants)로 선출된 사람들이 교회 전체를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수단들이 채택되어야 할 것인가를 자신들 사이에 창안하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부터 빗나가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직제는 필요에 따라 각 장소에 특별한 제도들(ordonnances patticulieres)을 허용하신다.” 여기서 언급된 감독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직제에서 나타나듯이, 어떤 목회자가 다른 목회자라도 우위에 있는 성직계급구조적인 감독체계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제30조는 목회자 상호간이나 교회들 상호간에 있는 동일한 권위와 동등한 힘을 언급함으로써 목회자들과 교회들 간에 존재하는 어떤 계급구조적인 사상도 강하게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sup>26)</sup> “이것은 결코 국가교회적 감독체제는

25) W. Niesel(Hrg.), *Bekennnisschriften und Kirchenordnungen der nach Gottes Wort reformierten Kirche*, 75. 이 신앙고백 마지막에 총회장 프랑스의 드 모렐이 1559년 5월 28일에 서명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Ainsi signé en l’original: FRANÇOIS DE MOREL, élu pour prédiser au synode, au nom de tou. Fait à Paris, le vingt-huitième de mai 1559, dans le règne du roy Henri, l’an 13.”

아니었다.”<sup>27)</sup>

## 2. 프랑스『교회치리에 관하여/교회치리법』(1559)

이제 『교회치리에 관하여/교회치리법』(Quant a la discipline ecclesiastique, 1559)을 중심으로 프랑스 초기 개혁교회의 직제를 살펴보자.<sup>28)</sup>

이 문서는 교회의 상호 동등성을 제1조에서 언급함으로써 교회들 간의 상호 위계 질서적인 중세 로마가톨릭교회의 직제론과는 정반대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1. 첫째로 어떤 교회도 다른 교회에 대한 수위권(principauté)이나 지배권(domination)을 주장할 수 없다.”(Niesel, 75) 노회나 총회의 의장은 만장일치로 선출되고, 그 회의의 종결과 함께 그 직무는 종료된다. “2. 각 콜로끄(colloque; 노회)나 총회에서 의장은 노회나 총회를 주재하고 거기에 속한 일들을 하기 위하여 만장일치로 선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 노회나 총회나 종교회의(Concile)와 함께 전술(前述)한 직무는 만료될 것이다.”(Niesel, 76)

총회에는 목회자와 장로와 집사가 참석할 수 있다. “3. 각 총회에 참석하는 목회자들(Ministres)은 자신들의 교회의 장로(Ancien)나 집사(Diacre) 또는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Niesel, 76)

견책은 율법주의적 정죄의 관점에서 이해되지 아니하고, 화해적이며, 형제적인 권고의 차원에서 이해되며, 전체 총회는 성찬식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4. 전체 총회(Synodes generaux)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회집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축하한 후에, 견책(譴責)이 있을 때에도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화해적이고도 형제적으로 견책해야한다.”(Niesel, 76)

프랑스 『교회치리법』은 세 가지 직분, 즉 목회자, 장로, 집사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먼저 목사직과 관련하여 살펴보자. 목회자 임직을 위하여 당회와 교회 전체의 동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6. 목회자들은 임직되기 위하여 당회에서 장로들과 집

26) 참고, W. Niesel(Hrg.), *Bekenntnisschriften und Kirchenordnungen der nach Gottes Wort reformierten Kirche*, 73의 각주 7: “여기에 Müller는 1603년 Gap의 국가총회 선언문을 가져온다. ‘Supertendant란 말은 다른 목사들에 대한 어떤 목사들의 우위성을 위한 것으로 파악될 수 없고, 교회에서 어떤 책임을 맡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27) 이형기, 『장로교의 장로직과 직제론』, p. 145.

28) W. Niesel(Hrg.), *Bekenntnisschriften und Kirchenordnungen der nach Gottes Wort reformierten Kirche*, pp. 75-79; David W. Hall & Joseph H. Hall(ed.), *Paradigms in Polity: Classic Readings in Reformed and Presbyterian Church Government*, pp. 134-139; 이형기, 『장로교의 장로직과 직제론』, pp. 143-145.

사들에 의해서 선택되고, 백성들에게 보여야 한다. 반대가 있을 경우, 당회에서 그것에 대하여 판결한다. 경우에 따라서 백성들이 선택된 목회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구속(拘束)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의 정당성을 위하여, 이 쪽이나 저쪽에서 만족이 있을 때, 모든 것이 지방회의(Concil Provincial)에 보고되어야 한다.” (Niesel, 76) “7. 목회자들은 진정성이 있는 문서들과 여기에 대한 증거들 없이 다른 교회로 보내지거나 종교 재판소에서 취조를 받지 아니한다.” (Niesel, 76) “8. 선택된 목회자들은 자신들이 파송된 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을 선택해준 교회 안에서 신앙고백에 서명을 해야 한다. 하등(何等)의 미신(迷信)이 없이, 선택은 목사들의 기도와 안수기도에 의해서 임직되어야 한다.” (Niesel, 76) “9. 한 교회의 목회자들은 다른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부재중에 있는 당회의 동의 없이 설교할 수 없다.” (Niesel, 76)

장로직과 집사직은 한국장로교회처럼 평생직이 아니다. “21. 장로직은 백성들을 모으며, 추문(醜聞)들과 그와 유사한 일들을 당회에 보고하되, 각 교회에 있는 문서로 작성된 양식(樣式)에 따라, 장소와 시간의 상황에 따라 이것을 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제시되어 우리가 사용하는 장로의 직분은 평생직(perpetuel)이 아니다.” (Niesel, 77)

집사직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집사직이 갖는 가난한 자와 병자를 돌보는 기능 외에 가정에서 교리를 가르칠 수 있고, 성찬식을 도와주는 기능이다. “22. 집사들에 관하여 그들의 책임은 가난한 자들과 감옥에 갇힌 자들과, 병든 자들을 방문하는 것과, 가정에서 교리문답을 가르치는 것이다.” (Niesel, 77) “23. 집사의 직무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성례를 집행하는 것도 아니라, 다만 이것을 도와줄 수는 있다. 그들의 직무는 평생직이 아니다.” (Niesel, 77)

당회는 목회자와 장로와 집사로 구성되어 있으나 목회자가 당회를 주재한다. “20. 장로와 집사는 당회(le Senat de l'Église)를 구성하며, 말씀의 사역자는 당회를 주재(主宰)한다.” (Niesel, 77)

최근 프랑스개혁신교회의 직제에는 큰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sup>29)</sup>

29) Église Réformée de France (ed.), *Le conseil presbytéral: Un ministère aux mille facettes* (Paris: Cordination Edifier & Former, 2009); Église Réformée de France (ed.), *Ministères: Ministères dans l'Église Réformée de France* (Paris: Cordination Edifier & Former, 2009).

### 3. 소결론

프랑스 개혁신교회의 직제는 전체적으로 칼뱅의 직제론과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신학대학교의 교수직이 없는 것이 특이하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교회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프랑스 로마 가톨릭교회 안에서 핍박에 상황에 있는 프랑스 개혁신교회의 정체성인 위그노들의 특징이 직제론 속에 녹아 있다. 특별히 직제 간 그리고 교회 간에 상호 동등성과 존중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자유 개혁신교회의 강한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집사도 당회는 물론 노회나 총회에 대표로 파송될 수 있는 점이 특이하다.

## IV. 결론

프랑스 개혁신교회는 칼뱅의 예배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전형적인 개혁신교회의 예배의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시편찬송가와 성례전이 예배에 강하게 반영되어 있고, 성도와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율법, 즉 십계명 낭독이 예배에 포함되어 있고, 특별히 봉헌헌금을 통한 사랑과 구제의 요소를 잘 간직하고 있다. 칼뱅 당시처럼 예배 집례자가 성찬상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다가 설교 시 강단에 올라갔다가 다시 성찬상으로 내려오는 등 칼뱅 당시 즈네브의 예배 진행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오늘날 프랑스 개혁신교회는 시편 찬송가 외에도 예배 중에 일반 찬송가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 개혁신교회의 직제는 전체적으로 칼뱅의 직제론과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신학대학교의 교수직이 없는 것이 특이하다. 그리고 로마가톨릭교회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프랑스 로마 가톨릭교회 안에서 핍박에 상황에 있는 프랑스 개혁신교회의 정체성인 위그노들의 특징이 직제론 속에 녹아 있다. 특별히 직제 간 그리고 교회 간에 상호 동등성과 존중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자유 개혁신교회의 강한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집사도 당회는 물론 노회나 총회에 대표로 파송될 수 있는 점이 특이하다.

## Key Word

칼빈(John Calvin), 예배(worship), 직제(office), 프랑스(France), 개혁교회 Reformed church)

## 참고문헌

- 이형기, 『장로교의 장로직과 직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 이장식 (편), 『기독교신조사<제1집>』, 서울: 컨콜디아사, 1979.
- 최윤배 공저, 『개혁교회의 신앙고백』,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7.
- Bersier, Eugène, *Project de Rêvision de la Liturgie des Église Rêformées de France*, Paris: Librairie G. Fischbacher, 1888.
- Cochrane, A. C. (Ed.), *Reformed Confessions of Sixteenth Century*, pp.137-158.
- Église Rêformée de France (ed.), *Liturgie*, Paris: Éditions Bergre-Levrault, 1955.
- Église Rêformée de France (ed.), *Le conseil presbytèral: Un ministère aux mille facettes*, Paris: Cordination Edifier & Former, 2009).
- Église Rêformée de France (ed.), *Ministères: Ministères dans l'Église Rêformée de France*, Paris: Cordination Edifier & Former, 2009.
- Hall, D. W. & Hall, J. H.(ed.), *Paradigms in Polity: Classic Readings in Reformed and Presbyterian Church Government*, pp. 156-158
- Jacobs, P. *Theologie reformierter Bekenntnisschriften in Gréndzègen*, Neukirchen Kreis Moers: Neukirchener Verlag, 1959.
- Niesel, W.(Hrg.) *Bekenntnisschriften und Kirchenordnungen der nach Gottes Wort reformierten Kirche*, 66-75.
- REGLISE REFORMEE DE FRANCE "Discipline et Règlement gènèral d'application d'articles de la Discipline," ([www.eglise-reformee.fr.org](http://www.eglise-reformee.fr.org)).